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100399

<http://www.thefrypan.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8.08.29

ssuunn11@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2.01.14

The Frypan Fried Chicken (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정 보 공 개 서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24-51, 2층 사무실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1544-2928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6442-785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부 02-1544-2928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IS creative)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외 2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52길 20-4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2010.10.19	이정규	02-1544-2928	02-6442-7857
		사업자등록번호	105-17-4452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해당없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해당없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합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합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The Frypan Fried Chicken(더 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The Frypan Fried Chicken (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당사의 로고는 튀김요리를 만들던 가장 기초적인 요리도구인 Frypan을 BI로 사용함으로써 초심을 잃지 말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 호	The Frypan Fried Chicken OO점	
상 표 (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0-0901519호 제41-0225474호
광 고	해당 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1,709,100	1,433,192	275,907	396,251	-96,643	-131,358
2022년	1,563,212	1,439,288	123,924	726,586	17,088	32,982
2023년	1,604,504	1,322,092	282,412	795,045	99,308	25,487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정규	사장	2007.07.~2013.10.	에이치에피시스템즈 사장	회사 경영
			2013.10.~2017.05.	(주)에이치엔피시스템즈 대표이사	회사 경영
			2017.05.~현재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사장	회사 경영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3

※ 직원 중 1명은 휴직 중(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명임)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가맹사업 경영	2017.05.~ 현재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등록번호: 20080100399)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7.05.~ 현재	nice two Meat u(나이스투미츄) (등록번호: 20130384)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7.05.~ 현재	더후라이팬 치킨클럽 (등록번호: 20140813)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여부 (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	----------------	--------------------------------

로고 (서비스표)	 가맹점간판,인테리어,시설물 및 판촉홍보활동	2012.01.31	제41-0225474호	이정규	2032.01.31
			제40-0901519호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가맹사업 현황

1.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을 시작한 날:
2008년 04월 10일(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6년 03월 02일)

2.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이치엔피시 스템즈	The Frypan Fried Chicken (더후라이팬후라이드 치킨)	이정규	2008.04 ~ 2013.10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141-4 미지빌딩 8층
(주)에이치엔 피시스템즈	The Frypan Fried Chicken (더후라이팬후라이드 치킨)	이정규	2013.10 ~ 2017.05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141-4 미지빌딩 8층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08 비금빌딩 8층 (서교동)
아이에스크리 에이티브	The Frypan Fried Chicken (더후라이팬후라이드 치킨)	이정규	2017.05 ~ 현재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7길 40, 6층 (서교동, 모노빌딩)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24-51, 2층 사무실

3.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업종

영업표지	업종	
The Frypan Fried Chicken (더후라이팬후라이드 치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후라이드 치킨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
팬 후라이드 치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	5	-	5	5	-	5	5	-
서울	3	3	-	3	3	-	3	3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1	1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1	1	-	1	1	-

5. 바로 전 3년간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가
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9	-	4	-	-	5
2022	5	1	1	-	-	5
2023	5	-	-	-	-	5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가맹점의 자세한 내
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외에 가맹본부가 경
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nice two Meat u	20130384	한식	9/0	11/0	11/0
		더후라이팬 치킨클럽	20140813	치킨	1/0	1/0	1/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5	109,721	7,620	189,717	18,972	6,131	409	
서울	3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1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1	해당없음						5곳 미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5	2,379일 (6년 189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해당없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9~40]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0			
광고	소계	해당 없음				
	(비공개)	해당 없음				
	(비공개)	해당 없음				
	(비공개)	해당 없음				
판촉	소계	해당 없음				
	(비공개)	해당 없음				
	(비공개)	해당 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IBK기업은

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IBK 기업은행	신수동지점	서울 마포구 서강로 105 (화일빌딩)	02-1588-2588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IBK 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가맹금 인터넷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별첨 11)

귀하는 또한 [IBK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해당 없음	
보험계약자	해당 없음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해당 없음	
보험기간	해당 없음	
보험금액	해당 없음	
보장범위	해당 없음	
지급조건	해당 없음	
보험금의 수령절차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해당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해당 없음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해당 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2,100]				
가맹비 (브랜드사용료 포함)	11,000	계약 체결 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조건 해당 시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되지 않음.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비	1,1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해지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기본 교육인원(1명) 외 1명 추가 시 550(천원, 부가세포함)의 추가 교육비 발생

1-1) 기존 가맹점 양수시의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6,600]				
양수 가맹비	5,500	계약 체결 시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되지 않음.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비	1,1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기본 교육인원(1명) 외 1명 추가 시 550(천원, 부가세포함)의 추가 교육비 발생

※ 양수도의 경우 브랜드 사용료는 면제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해당 없음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2,100
가맹비	11,000
교육비	1,1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7,035]	3,802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28,050	1,87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1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49.5㎡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1,870 천원 추가부담 단,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은 공사비용의 5 % 추가 발생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의탁자)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9,581	638	물품 공급 7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주방기기)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11,440	762	물품 공급 7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초도집기)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6,864	457	물품 공급 7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홍보/판촉비)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1,100	73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 비용 제외)	소모품비, SNS홍보 등 대행 대가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개업지원)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0	0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POS)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0	0			

※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시공 및 물품 구입 시 감리비는 3.3㎡ 당 110 (천원, 부가세포함)입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 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

	보건증 발부 필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보건증 발부 필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금액(천원)	52,250	총액의 70%	총액의 10%	총액의 10%	1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15일	계약일+1월	계약일+2월
비고	49.5㎡ 기준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9~4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상표사용료)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월 165	다음 월 5일			
보수교육비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실재료비와 기타경비	개별청구	교육 실시전 (미교육시)	교육실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주에 실시되는 교육
특별교육비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실재료비와 기타경비	개별청구	교육 실시전 (미교육시)	교육실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아르바이트교 육 포함)

관촉분담비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관촉물 제작비용 또는 기타 관촉비용(협의하여 결정)	개별청구	관촉 실시전	관촉활동 실시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관촉기획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간판변경 총공사비의 50%	개별청구	간판 변경전	간판설치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해당없음				가맹점사업자와 시공업체간의 개별계약사항
점포환경개선 비용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청구	점포 개선활동 전	점포 개선활동 실시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사업자와 시공업체간의 개별계약사항
광고분담비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될 수 있음	개별청구	광고 게시전	광고 실시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시행되는 공동광고
지연이자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해당 없음				
추가 교육비	해당 없음				
점포 이전비	해당 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가맹금과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5-36] 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 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가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안심 후라이드치킨 & 감자칩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신메뉴 출시된 경우 온라인 공문을 통하여 공지)	1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및 가맹점 운영권 제한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계약해지 절차 준용
다리살 후라이드치킨 & 감자칩			
곱빼기 후라이드치킨 & 감자칩			
한 마리 뼈치킨 (후라이드치킨 & 감자튀김)			
한 마리 뼈치킨 (반반 치킨 & 감자튀김)			
한 마리 뼈치킨 (핫몬스터치킨 & 감자튀김)			
한 마리 뼈치킨 (청양어니언치킨 & 감자튀김)			
한 마리 뼈치킨 (스위트갈릭치킨 & 감자튀김)			
한 마리 뼈치킨 (데리야키치킨 & 감자튀김)			
순살양념치킨			

(후라이드 & 양념 & 샐러드)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순살양념치킨 (양념 & 양념 & 샐러드)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신메뉴 출시된 경우 온라인 공문을 통하여 공지)	1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및 가맹점 운영권 제한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계약해지 절차 준용
순살양념치킨 (청양어니언 & 핫몬스터 & 데리야끼)			
순살양념치킨 (청양어니언 & 감자튀김)			
순살양념치킨 (스위트갈릭 & 감자튀김)			
순살양념치킨 (핫몬스터 & 감자튀김)			
순살양념치킨 (데리야끼 & 감자튀김)			
치떡 (안심후라이드치킨 & 감자튀김)			
새우링			
양념감자튀김			
맥앤치즈			
감자샐러드			
코올슬로			
떡튀김			
생맥주 작은잔			
생맥주 큰잔			
생맥주 피쳐			
콜라			
스프라이트			
웰치스			
기네스 병맥주			
하이네켄 병맥주			
호가든 병맥주			
아사히 병맥주			
코로나 병맥주			
골뱅이쫄면			

나초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후라이팬샐러드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신메뉴 출시된 경우 온라인 공문을 통하여 공지)	1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및 가맹점 운영권 제한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계약해지 절차 준용
핫치즈감자그라탕			
샐러드파스타			
샐러드 쫄면			
땡초 오뎅탕			
감자칩			
케이쥬비레몬 병맥주			
버니니 병맥주			
산미구엘 병맥주			
카프리 병맥주			
버드와이저 병맥주			
밀러 병맥주			
카스 병맥주			
하이트 병맥주			
생과일에이드(청포도레몬)			
생과일에이드(자몽)			
달콤맥주(청포도)			
달콤맥주(자몽)			
소주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일체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안심후라이드치킨&감자칩	19,000	온라인 공문발송	
다리살후라이드치킨&감자칩	23,000		
곱빼기후라이드치킨&감자칩	33,000		
한마리빼치킨(후라이드치킨&감자튀김)	19,000		
한마리빼치킨(반반치킨&감자튀김)	19,000		
한마리빼치킨(청양어니언치킨&감자튀김)	21,000		
한마리빼치킨(스위트갈릭치킨&감자튀김)	21,000		
한마리빼치킨(데리야키치킨&감자튀김)	21,000		
순살양념치킨(후라이드&양념&샐러드)	33,000		
순살양념치킨(양념&양념&샐러드)	34,000		
순살양념치킨(청양어니언&핫몬스터&데리야끼)	25,000		
순살양념치킨(청양어니언&감자튀김)	21,000		
순살양념치킨(스위트갈릭&감자튀김)	21,000		

순살양념치킨(핫몬스터&감자튀김)	21,000		
순살양념치킨(테리야끼&감자튀김)	21,000		
치떡(안심후라이드치킨&감자튀김&떡볶이)	21,000		
골뱅이쫄면	14,800		
나초칩	7,500		
후라이팬샐러드	7,500		
핫치즈감자그라탕	7,500		
샐러드파스타	7,500		
샐러드쫄면	7,500		
땡초오뎅탕	7,500		
감자칩	7,500		
새우링	5,500		
양념감자튀김	4,000		
맥앤치즈	4,000		
감자샐러드	4,000		
코울슬로	4,000		
떡튀김	3,000		
생맥주 작은잔	3,500		
생맥주 큰잔	5,000		
생맥주 피쳐	11,500		
콜라	2,000		
스프라이트	2,000		
웰치스	3,000		
기네스병맥주	8,500		
하이네켄병맥주	6,000		
호가든병맥주	6,000		
아사히병맥주	7,000		
코로나병맥주	6,000		
케이쥬비레몬병맥주	6,000		

버니니병맥주	7,000		
산미구엘병맥주	6,000		
카프리병맥주	4,000		
버드와이저병맥주	5,000		
밀러병맥주	6,000		
카스병맥주	4,000		
하이트병맥주	4,000		
엑스필에스병맥주	4,000		
생과일에이드(청포도레몬)	4,000		
생과일에이드(자몽)	4,000		
달콤맥주(청포도)	4,000		
달콤맥주(자몽)	4,000		
플래티넘 페일에일	6,500		
플래티넘 아이.피.에이	6,500		
소주	5,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반인은 대상으로 후라이드 치킨을 제공하면서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업종	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더후라이팬 치킨클럽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에는 추가로 개설을 금지한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
당사 브랜드인 [더후라이팬 치킨클럽]의 영업지역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한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갱신비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제6조 9항 제12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6조 12항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6조 12항
○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17조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이 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제20조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0조 1항,2항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40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2조
○ 가맹계약서 제 6조 1항, 3항,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저해할 경우	제6조 1항,3항,4항
○ 가맹계약서 제 6조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메뉴의 균일성을 해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메뉴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제6조 6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6조 6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제27조 5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 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 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제28조
○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31,32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제13조 6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3조
○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제33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25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제26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26조 4항
○ 가격표, 메뉴판, 원산지 표시 등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표시나 게시, 부착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제37조
○ 매출향상,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제공한 홍보포스터 등의 부착물을 규정된 장소 및 시기에 부착하지 않거나 규정된 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동일한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아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태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동일한 유형의 고객클레임이 4회 발생한 경우)	
○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고객의 클레임이 발생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대중매체(인터넷, TV, 라디오, 신문, 잡지)에 그 사실이 유포되어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	
○ 가맹점POS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킬 경우	
○ 가맹점주가 상품교환권, 무료이용권, 업체 프로모션 제휴 등의 고객에 대하여 차등대우, 거부로 인해 고객 클레임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35조 2항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6조 제37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37,38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

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즉시 계약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8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사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관련 법 제정, 개정에 따른 경우		제37조
○ 양 당사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서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중에는 당사가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02-1544-2928)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양수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등의 부담비용)을 가맹본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

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인 경우,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 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양도 절차와 동일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양도 절차와 동일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의 영업지역이 속한 동일한 시·도 지역 내에서 귀하가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후라이드치킨류를 제공하면서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02-1544-292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9시간 (17:00 ~ 02:00)	주6일 이상	문의: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02-1544-29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점의 매출활성화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공동의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판촉물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제작비용은 실비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 밖의 판촉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 광고	광고비의 25%	광고비 75% 중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 광고 +가맹점 모집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 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관측행사	가맹점 홍보	없음	전액 부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관측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시 적용
할인카드·멤 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10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별개로 광고·관측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관측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측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갑” : 가맹본부, “을” : 가맹점사업자)

- 다 음 -

- ① “을” 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3년간 제40조(가맹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 은 “갑” 에게 위약별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을” 이 제28조(원·부재료 등의 직접 조달)에 대하여 제1항,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을” 은 “갑” 에게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을” 이 POS입력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임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전월 매출액의 10%를 적발 후 1주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 이 제38조(계약의 해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하거나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 후라이드 치킨)]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 은 “갑” 에게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 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 은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원)씩 “갑”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⑥ “을” 이 계약 종료 일주일 이후에도 제 39조(계약의 종료와 조치)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종료 일주일 이후부터 브랜드 명성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십만원(₩100,000원)씩 “갑”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⑦ “을” 의 영업 종료 일주일 이후에도 제 39조 1항의 품목이 “갑” 의 소재지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을” 은 “갑” 에게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위약별 이외에 “갑” 또는 “을” 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⑨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16p~21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02-1544-2928) -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http://www.thefrypan.co.kr)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점포개발착수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 포함)	-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가맹금 예치 (IBK 기업은행)	D-30~29	
점포실측/설계	- 매장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투자비 산출	D-28~26(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5(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5~1(2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 가맹점사업자, 아르바이트 대상 교육	D-15~11(5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D-6~1(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집기, 장비교체비용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등), 월평균 매출액등을 고려하여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 - 단, 집기, 장비고체비용은 20% 부담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 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3일간	1,000 한도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서면 및 구두로 제시하 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본부 운영팀 담당자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 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 개선방안을 서면 및 구두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 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본부 운영팀 담당자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자금 지원	해당 없음			
신용 대출	발생시 검토			가맹본부 확인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 원을 원하는 경우 02-1544-2928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월매출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The Frypan Fried Chicken(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5일(현장실습 2일 포함)	1,100	최초 계약시 이수
특별 교육	사안에 따라 협의	실재료비와 기타경비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선택 교육
보수 교육	사안에 따라 협의	실재료비와 기타경비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나, 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필수 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3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6조에 따라 상호 협의한 기한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아이에스크리에이티브(02-1544-292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현황
(2023년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2년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1년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2 인테리어 공사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3 주방기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4 초도물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5 의·탁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6 원·부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7. 개업지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8.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 : _____

구분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별첨 9.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가맹희망자용)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IS creative)		영업표지	The Frypan Fried Chicken (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부분	제공사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 “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고,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며 이에 확인서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 (인) 가맹희망자: 서명 또는 (인)

..... (절취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가맹본부용)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아이에스 크리에이티브 (IS creative)		영업표지	The Frypan Fried Chicken (더후라이팬후라이드치킨)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부분	제공사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 “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고,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며 이에 확인서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 (인) 가맹희망자: 서명 또는 (인)

별첨 10 가맹점관리기록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11 가맹금 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2. 18.>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